

[별표 3] <신설 2011.9.22.> <개정 2013.9.3, 2016.3.17.>

장비사용료 산정 및 할인가준(제21조 관련)

1. 장비사용료 산정기준

$$\text{장비사용료} = (\text{이용단가} \times \text{사용량}) + \text{직접비} + \text{간접비}$$

① 이용단가는 장비 특성에 따라 시간당, 개당, 건당 기준에 따라 정한다. 시간당 이용단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한다.

$$[\text{시간당 이용단가} = \text{장비취득가액} \times 0.06^* / \text{연간 표준활용시간}^{**}]$$

*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6%로 산정

**연간 표준 활용시간은 전년도 실제가동 활용시간을 적용하며, 신규도입장비와 같이 적용이 어려운 경우 1,000시간으로 함

② 사용량은 실제 이용한 양(시간, 개, 건 등)으로 한다.

③ 직접비는 장비운동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, 유지보수비, 장비운영인력 인건비***, 유류비**** 등 직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
*** 해당 인력의 총 인건비

**** 장비운영 시 직접 사용되는 연료비, 가스비, 전기비, 수도비 등의 비용

④ 간접비는 유틸리티 및 부대시설운영비 등 간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
※ 장비사용료를 산정할 때 상기 산정기준을 적용하되, 장비를 구축한 정부부처나 장비활용사업 등 부처의 별도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한다.

※ 다만, 장비운영특성 및 특별 공정기술이 필요할 경우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2. 장비사용료 할인가준

할인대상	할인율	비 고
도내 투자기업	30%	재단과 투자협약 체결하고 실현한 경우
입주(졸업)기업	20%	본사/지사/사업자등록지가 재단인 경우
도내기업·기관	15%	본사/사업자등록이 전라남도 소재인 경우
업무협약체결 기업·기관	10%	

※ 장비 할인율은 사용료 단가 산출기준 중 실소요경비에 해당하는 직접비/간접비를 제외한 이용단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